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李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徐相權

國務委員 文教部長官 印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成仁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李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祿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山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李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趙

國務委員 李允業

國會議長 申翼熙 貴下

20
憲法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三十一條에 다음一項을加한다

國會之下院과上院으로서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之國民의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

에依하여選舉된議員으로서組織한다 但上院

議員中國民의選舉한議員의二分之一에該當한

는議員之國家에功勞있는者와學界에名望이
있는者中에서國務會議의議決을받아大統領이
任命한다

누구든지西院의議員을兼할수없다

國會議員의定數와選舉에關한事項之法律로
써定한다

第三十三條 下院議員의任期는四年으로한다

上院議員의任期는六年으로하고二年마다議員의
三分之一을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

下院의在籍議員四分之一以上또는上院의在籍議
員二分一以上의要求에依하여兩院의議長之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第三十六條 下院之議長一人、副議長二人을 選舉한다

上院之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二人을 選舉

한다

上院議長之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三十七條 各院之憲法及國會法에 特別한 規

定이 없지 않으나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法律案其他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이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下院議長의 議決이 있어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議長은議決에 있어서可否同數인境遇에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中「國會의決議」를「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決議」로 한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 있다

法律案、豫算案其他議案之 먼저 下院에 提出하여
 야한다 但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命에 關
 한 議案之 上院에 먼저 提出할 수 있다

339

一 院에서 否決된 議案之 他院에 移送할 수 없다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

어 十五日以内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法律案에對하여異議가 있는때에 그大統
領은異議書를附하여兩院中의一院에還付하여
國會의再議에附한다國會에서各院이그在籍議
員三分之二以上の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の
贊成으로써前과같이可決한때에그法律案은
法律로써確定된다

24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國會에
還付되지 아니하는 時에 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 事
定된다

大統領之前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之 特別한 規定이 없는 時에 는 公布日로부터

제 46 조
제 46 조

二十日後에 효력이 발생한다

第十三條 各院은 國政을 監査할 수 있다

第十五條 第一項中 「國會」을 「各院」으로 하고 第

二項中 「在籍議員」을 「各院의 在籍議員」으로 한다

第四十六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下院議員五十人以上의 發議가

25
있어야 하며 그決議之兩院合同會議에서各院의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七條第二項中「國會議員」은「上院議員」으로 한다

第四十九條中「國會의同意」를「그院의同意」로「國會

의要求」를「그院의要求」로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民의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에依하여各々選舉한다

國會開會中에大統領과副統領을選舉할 때에는
그選舉報告를받기爲하여兩院의議長之國會의
集會를公告하여야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에 關한 開票 報告之 特
 別市外 道의 選舉 委員會가 立候補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上院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上院議長은 即時 各院의 在籍 議員 過半數가 出席
 한 公開된 兩院 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
 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數로써 決

定한다 最高得票者가 二人以上인 때에 는 前項의

西院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者를 決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서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中 「國會」를 「兩院合同會議」로 한다

第六十二條에 다음一項을 加한다

大使와 公使之 大統領이 任命하고 上院이 承認을 받

아야 한다

第六十九條第一項中「國會議員總選舉後」를 「下院

議員總選舉後」로 바꾸고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務委員之大統領이任命하고^下院의承認을 얻어

야한다

第八十一條第三項中「國會議員五人」을 「下院議員三

人^院과上議員二人」으로 한다

58

第九十八條第一項中「大統領以下之國會斗在籍議員三

分之一以上」을 「大統領下院斗在籍議員三分之一以

上以下上院斗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으로 하고第四

項中「國會에서」를「兩院에서各各」로 한다

附 則 (檀紀四三五年 月 日憲法改正)

이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但上院에關한

規定以上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之上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施行後 上院이 構成될 때까지 之 兩院 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之下院이 行하고 上院議長이 行할 事項之下
院議長이 行한다

上院之 本法施行後 遲滯없이 構成하여야 한다

上院이構成된때까지之下院의議決로써國會의議決
로한다

이憲法施行時의國會議員은下院議員으로보이고任
期는國會議員의任期의殘期로써^{終了}한다

이憲法이施行된後 처음으로選舉된上院議員은特別
市外道마다그得票數의順次에따라第一部、第二部



제 26 조

第三部로 나눈다. 第一部의議員의任期는六年、第

二部의議員의任期는四年、第三部의議員의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令順에 의한다

上院議員中任命에 의한다. 議員의 처음任期는 前年^項에

準하고 各工任期는 大統領이 定한다

이憲法施行時의 大統領과 副統領은 이憲法에 의

社大統領卽副統領으로 社工工任期之 檀紀四千二百
八十五年七月二十三日 至 社終了 社斗

공백